

# 瑞山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1. 發 議 者 : 박영웅의원의외 6인

2. 發議日字 : 1998. 8. 19

## 3. 改正理由

-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 하고, 잘못 표기된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고
-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부합 되도록 하려는 것임.

## 4. 主要骨子

-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정수를 8인 에서 7인으로 조정함(안제2조).
- 조직개편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지정함(안제3조).

-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안 제5조).
- 특별위원회 설치시 활동 기간을 정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7조).

## 5. 檢討意見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내용과 잘못 표기된 일부 부서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그러나 현행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의 삭제로 인하여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 폐회중 위원회 활동 등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지방자치법

제53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회의 진행이 그 주요 기능이며, 상임위원회 간사의 임무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